

### 경운대학교 취업약정형교육과정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이라 함은 대학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산업체는 이수자의 채용을 약정하는 “채용약정형” 교육과정 또는 이수자의 취업을 우대하는 “취업우대형” 교육과정을 의미한다.

②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3조(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의 설치)** ①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편 시기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.

②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은 학부(과) 단위 및 타 학부(과)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4조(교육과정 편성)** ① 취업약정형 교과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취업약정형 교과 과정에 있어서 타 학부(과)와 공동으로 설치시,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개별 학부(과)단위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③ 취업약정형 비교과 과정은 별도의 이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**제5조(산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)** ①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(과)에서는 해당 학부(과)의 인재양성유형에 적합한 지역사회 기반의 건실한 산업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(과)에서는 행정부서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③ 협약은 대학-산업체간의 상호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취업약정형 교육과정 협약은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최소 1개월 이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채용약정형 교육과정은 협약서에 채용예정약정 인원을 명시하여야 하며, 취업우대형 교육과정은 협약서에 취업우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⑥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산업체에서는 원활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추천
2. 현장전문가 특강 지원
3. 현장학습(견학) 지원

4. 현장실습(4주 이상) 및 인턴십과정(16주) 제공

5. 현물 및 운영 지원금 제공

6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의 운영)** ①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은 설치한 학부(과)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며 운영 주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복수의 학과(전공)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 학부(과)를 선정하고, 그 학부(과)의 주임교수가 운영 책임자가 된다.

② 학부(과)에서는 졸업예정학기 시점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에서 명시한 이수 기준에 따라 이수자를 선정하고, 그 명단을 교무처로 통보한다.

**제7조(학사 관리)**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 및 성적 등의 학사 관리 사항은 경운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.

**제8조(준수사항)** ①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(과)에서는 산업체가 요구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.

②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을 요구한 산업체에서는 주문식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어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취업약정형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운영공동체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